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100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4. 24.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: 2026. 4. 24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6. 5. 7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환경과장 최정란)

가. 개정이유

○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이 변경되고, ‘친환경상품’이 ‘녹색제품’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 규정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하며,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「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」를 「고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 변경(안 제명)

2) ‘친환경상품’을 ‘녹색제품’으로 각각 변경(안 제1조～제16조)

3)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(안 제4조, 제8조 및 제9조)

4) 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으로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 반영(안 제10조제1항제3호)

5)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7조)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: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2)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3) 합　　의
  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    •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9392(2026. 2. 27.)호]
4) 기　　타
   가) 입법예고
      - 예고기간: 2026. 3. 3.～2026. 3. 23.(20일간)
      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   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  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   라) 신 · 구조문대비표: 붙임
   마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호철)

가. 검토결과 및 의견

❍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, 법령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됨.

❍ 중복 규정 삭제를 통해 조례의 간결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,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입법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효과가 기대됨.

❍ 조문 정비는 주민 및 행정 실무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운영상 실효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나. 종합 검토의견

❍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내용과 형식 및 체계 전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　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5. 7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